

아나키, 社會契約 그리고 分配*

崔炳瑞**

논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약주의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아나키적 상황의 분석에서 출발하여 개인간의 갈등과 협동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계약의 수립단계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사회계약의 기반 위에서 어떠한 사회적 제도가 출현할 수 있으며 잉여생산물이 어떻게 분배될 수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우선 사회계약의 전제로서의 아나키의 특성과 그 자연균형상태를 세 가지 입장, 즉 Hobbes, Locke 그리고 Rawls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에 의한 잉여산출물의 분배를 위한 협상과 그에 따른 사회제도의 출현을 단순한 2인 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여 몇가지 명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계약에 기초하여 수립된 분배원칙인 Rawls의 차등원칙과 Gauthier의 상대적 최소최대 양보의 원칙을 유도하고 이 양자가 상호부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핵심주제어 : 아나키, 사회계약, 분배

경제학문현연보 주제분류 : K0

I. 머리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관계 또한 복잡하게 얹히게 되고 각 개인과 집단의 이익의 추구에 따른 개인 간 갈등과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공정하게 조정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의 수립은 대단히 중요하다. 보편적 일반원칙이란 복잡다단한 난마와 같이 얹혀 있는 집단 간 이해관계를 보다 단순한 관계로 변환시켜야만 얻어 질 수 있다. 산악인들 사이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정상에 올라가서 다

* 본 논문에 유익한 論評을 하여 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同德여자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시 내려다 보라”는 유용한 경구가 있다. 사회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인 制度나 법률도 이처럼 정상에서 내려다 볼 때 얻어질 수 있는 원칙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原型의 탐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간은 왜 사회적 共同體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구조와 제도를 만들게 되었는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보다 근원적인 질문으로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기 이전에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부터 질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구성 이전에 原初的인 초기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생성되는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대략적 平等性(rough equality in the primitive state)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강자와 약자 간에 상당한 불평등이 현시되어 이미 支配와 피지배의 관계가 지배적인지에 따라 社會契約에 의한 사회적 제도의 형태가 다른 모습으로 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란 계약주의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든 구성원의 행위를 조정하는 조직체이다. 즉, 인간이 인위적으로 구성한 ‘相互이 익을 위한 공동結社體’이다. 이 공동결사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사회적 제도는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며 또한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사회제도는 사회계약에 의해 滿場一致로 합의되어야만 하며, 어떠한 사회제도와 규칙도 개인의 이익에 반하여 강제될 수 없다.

본 논문은 사회계약주의적 接近方法에 기초하여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의 아나키적 상황의 分析에서 출발하여 개인 간에 葛藤과 協同을 통하여 어떻게 사회계약의 수립단계에 도달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 사회계약의 기반 위에서 생산의 剩餘物이 어떻게 分配될 수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제 II 절에서는 사회계약의 전제로서 아나키 특성과 그 自然均衡상태를 論한다. 제 III 절에서는 초기적 자연균형상태로서의 아나키에 대한 세 가지 立場, 즉 Hobbes的, Locke的, Rawls的 견해를 비교 분석한다. 제 IV 절에서는 사회적 협동에 의한 剩餘산출물의 생산과 분배를 위한 협상을 단순한 2人모형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제 V 절에서는 잉여생산물의 분배를 위한 협상을 통하여 어떠한 사회제도가 출현하게 되며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할 때 사회제도는 어떻게 영향받는가를 검토한다. 제 VI 절에서는 사회계약주의에 입각하여 도출된 Rawls와 Gauthier의 分配原則을 통하여 사회계약적 분배제도가 公正性의 속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인다.

II. 原初的 상태(Initial Position)로서의 아나키적 均衡

사회계약의 基底가 되는 초기 상태로서의 아나키에 대해 분석을 시도해 보자. Buchanan · Tullock(1962) 그리고 Buchanan(1975)은 아나키적 自然分布 상태로부터 만장일치적 사회계약이 어떻게 成立하게 되며 그 결과 얻어지는 국가의 出現에 관하여 경제적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또 Schmidt-Trenz(1989)는 Buchanan적 사회계약모형에서의 자연상태 성격을 규명하고 있으며, 사회계약에 있어서 協商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崔炳瑞(1997)는 아나키적 상태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논하고 있다. 여기서는 원초적 상태로서의 아나키를 그 상태에서의 물질적 조건과 구성원의 意識의 조건에 따라 특징지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조건에 의하여 사회계약의 양상이나 사회계약하의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물질적 조건을 생각해 보자. 이것은 물질적 상태가 얼마만큼 풍요로운가의 문제이다. 첫째로 만약에 원초적 상태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굳이 사회적 공동체나 그를 위한 계약은 필요없게 될 것이다. 아마도 이 상태는 물질적으로는 천국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Buchanan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가정하듯이 자원의 稀少性에서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지 않는다. 개인 간의 사회적 갈등은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¹⁾

둘째로 물질적 조건이 대단히 희소하다고 상정해 보자. 원초적 상태에서 인간이 有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대단히 희소하다고 하면 이 상황은 Hobbes가 상정한 ‘萬人에 대한 萬人의 투쟁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 때 개인은 Hobbes가 표현한 대로 ‘외롭고, 가난하고, 짐승 같고, 단명한’ 생활을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발적인 사회적 協同이나 공평한 계약관계를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따른 사회적 잉여의 正義로운 配分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극도로 자원이 희소한 부존상태하에서는 만인의 이기적 동기에 의한 투쟁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연상태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을

1) Buchana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Social strife might arise in Paradise.” Buchanan(1975), p. 23.

Hobbes的 함정 또는 개인적 함정(Leviathan Trap)이라고 부른다. Varoufakis(1991), 崔炳瑞(1997)는 이러한 Hobbes적 함정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이 Hobbes적 함정은 본질적으로 고전적 罪囚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과 일치한다.

셋째로, 초기에 자원과 재화의 賦存상태가 ‘적당한 희소성(moderate scarcity)’을 갖고 있는 경우를 想定하자. 이러한 상태를 바로 Rawls(1971, 3장)가 사회적 협동이 가능하기 위한 환경적 前提條件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자원이 극도로 희소해지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회적 협동이 불가능한 Hobbes적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 잉여의 창출이나 이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계약을 마련하기보다는 자연적 생존을 위해 사회적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나 자유를 회생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반대로 풍요로운 자원으로 희소성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굳이 재화의 效率的 생산이나 분배에 공정한 제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원의 적절한 희소상태에서는 각 개인들은 서로 경쟁하게 되며 개인 간 경쟁이 사회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 사회적 협동을 위한 사회계약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나아가 사회계약에 기초한 제도와 규칙이 출현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상태에서 合理的인 개인은 적어도 물질적 풍요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침탈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아나키적 상태를 개인의 의식적 조건에서 살펴보자. 아나키적 자연 상태는 개인의 사회계약에 대한 의식 정도에 따라 다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계약無知단계(contract ignorant stage)로 사회계약이나 憲法과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전혀 제기되지 않는 단계로 Hobbes의 아나키 상태는 이 단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계약意識단계(contract conscious stage)이다. 여기에서는 개인 간 협력과 調和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따라서 사회계약에 따른 소유권 확립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Rawls적 원초적 상태에서는 이 상황에 있는 합리적 개인들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계약의식적 자연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의식 단계는 Rawls적 단계라고 부를 수 있다.

Buchanan은 첫번째의 Hobbes의 단계에서도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Bush(1972), Buchanan(1975) 등이 도출한 自然的 分布상태(natural distribution)는 바로 自然發生的 秩序상태의

아나키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균형상태를 자연분포적 균형 또는 아나키적 균형(anarchistic equilibrium)이라고 한다. 그러나 Hirshleifer(1995)에 의하면 이러한 아나키적 균형상태는 대단히 취약하고 안정적이지 못하여 이 상태는 쉽게 無定型의 混沌상태(amorphous chaos)로 흰원되거나 아니면 進化와 발전과정을 거쳐 보다 정교한 位階질서상태(hierarchy)로 진전될 수 있다고 한다.

아나키에서의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활동으로 구분지을 수 있다. 첫째로 생산활동, 둘째로 타인 생산물에 대한 掠奪, 셋째로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방어활동 등이다.²⁾ 자연적 분포의 균형상태에서는 생산과 약탈 및 방어활동의 시간당 한계생산물의 가치가 같아지는 상태이며, 따라서 개인의 시간배분이 最適상태에 있게 된다. 이것은 곧 자신의 두 활동에 대한 시간배분을 변경하게 되면 자신의 생산물의 총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최적상태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이 자연적 분포의 균형상태는 Nash的 균형상태라고 할 수 있다.

III. 사회계약의 출발점으로서의 自然均衡상태에 대한 세 가지 견해

앞 절에서 원초적 상태에서의 자연적 균형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여기에서는 사회계약의 기본적 출발점으로서 어떠한 아나키 狀態가 전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분석하도록 한다. 필자는 이 세 가지 견해를 Hobbes의 자연상태, Locke의 자연상태 그리고 Rawls의 자연상태로 분류하기로 한다.

古典的 社會契約論에서도 분명한 모형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 출발점은 자연상태이다. Hobbes뿐만 아니라 Rousseau 역시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며, 非社會的이고,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인간으로 묘사했다. Locke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개별 주체의 ‘소유권’에 대한 自然權(natural rights)의 認知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1970

2) Buchanan은 방어, 약탈활동을 한데 묶어 하나의 활동으로 보았다(defense-predation effort). 또한 Buchanan의 이론은 일종의 만나(Manna) 모형이어서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없다. 이 경우 생산은 일종의 획득 또는 채취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생산활동이 포함된 보다 정교한 모형으로는 Skogh and Stuart(1982)의 논문을 들 수 있다.

년대부터 그 동안 풍미했던 公利主義的 전통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전적 사회계약론에 기초한 새로운 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류는 ‘契約主義의 復活’이라고 命名해도 좋을 듯하다. 이러한 신계약주의(Neo-contractarianism)는 Rawls(1971), Nozick(1974), Buchanan(1975), 그리고 최근에는 Gauthier(1986) 등에 의해서 형성되어 왔는데, 이들은 고전적 계약론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시킨 셈이다.³⁾ 즉, 이들의 이론은 假說的인 상황에서 思考實驗(Gedanken experiment)에 의한 만장일치적인 사회계약의 導出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고실험이 가능한 가설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개인이 개인의 特性과 능력 및 사회적 地位와 역할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원초적 상태, Rawls의 표현에 의하면 無知의 帳幕(veil of ignorance)에 가리워져 있다. Buchanan · Tullock(1962)의 헌법체정이론 역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아나키적 상태를 상정한다.⁴⁾ 다만 Nozick의 경우는 분석의 초점이 약간 달라 이와 같은 자연상태에서 출발하여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極小國家(ultra-minimal state) 또는 最小國家(minimal state)가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교한 이론체계를 보여 준다.⁵⁾

1. Hobbes的 자연상태

Hobbes의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행위에 어떠한 외부적 制約조건이 없다 (“In the state of nature every man has a ‘right’ to everything.” Buchanan(1975), p. 24). 따라서 어느 누구도 애초에 아나키 상태에서는 자연자원에 대해서 어떠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어

3) Gordon(1976)은 신계약주의의 대두에 대해서 개괄적 조명을 시도하고 있는데, Rawls, Buchanan, Nozick 등을 新契約主義者라 칭하는 이유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사회구조에 관한 원칙을 제정하는 시점을 ‘가설적인(hypothetical)’ 원초적 상태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개인의 특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차단된 원초적 상태는 Vickrey(1960)와 Harsanyi(1955, 1984) 등과 같은 신공리주의자들(neo-utilitarians)의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론의 출발점이다. 특히 Rawls와 같은 신계약주의자를 비판한 Harsanyi의 균등화모델(equi-probability model)은 원초적 상태에 기초를 둔 신공리주의의 대표적 모형이다.

5) Nozick은 개인 富의 소유권획득과 거래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制度로서 國家의 出現을 모델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는 私的인 保護組織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 조직간에 자유로운 競爭을 통하여 獨占的인 지위를 갖게 되는 하나의 기구가 출현할 수 있고, 이것이 곧 Nozick이 命名한 極小國家이다.

떠한 행위도 강제할 외부적 제약이 없다는 사실은 모든 자원에 대해서 오히려 개인은 ‘역설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Hobbes의 상황에서 한 개인의 생산과 所有權의 관계는 어떠한가 보자. 어떤 개인도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 財產權이라는 제도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유권이란 자신이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Hobbes의 상황에서 시간배분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산과 약탈, 방어활동의 시간당 한계생산물 크기에 달려 있게 된다. 이러한 아나키상태는 결국 Nash의 균형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 자연적 분포상태가 바로 Buchanan의 인 사회계약을 위한 協商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Hobbes의 자연상태에 기초한 고전적 사회계약이론을 현대에 부활시킨 사람이 바로 Buchanan(1975)이다. 이러한 Buchanan의 자연상태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能力과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 한, 아나키적 균형상태는 不平等한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아나키적 균형상태에서 맷게 되는 사회계약에 의거한 소유권의 분포상태 역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불평등한 상태는 公正한 것인가? 이에 대한 Buchanan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Buchanan의 정의란 同意에 기초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⁶⁾ 이런 의미에서 Buchanan의 정의의 개념은 ‘派生的 正義(derived justice)’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uchanan적 파생적 정의의 개념을 받아들이면 자연상태에서의 불평등이 사회계약 이후의 소유권배분의 불평등으로 반영되는 것은 不公正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Locke의 상태

Locke의 아나키에서는 Hobbes의 상태와는 달리 개인의 어떠한 행위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는 않는다. Locke의 개인은 어느 정도 所有權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은 각자가 처한 자연환경에 자신의 勞動力を 가하여 얻어진 생

6) Buchanan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Justice is rooted in consent.” 그에 의하면 어떤 규칙이 공정하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경기자들이 그 규칙에 동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것은 그 규칙이 공정하기 때문에 경기자들이 동의한다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다. 즉, 어떠한 규칙이든 그것이 자유롭게 계약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들의 순수한 합의의 산물일 때는 그 규칙이 공정하다는 의미이다.

산물에 관해서는 생산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고, 이에 대하여 다른 타인들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Locke의 정의는 ‘互惠的 正義’(reciprocal justice)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Locke적 아나키 개념에 현대적인 해석을 가한 사람이 바로 Nozick(1974), Gauthier(1986) 등이다. 이들은 Locke가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의 수립을 위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상정한 단서, 즉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중요한 자원은 독점할 수 없다는 단서(Lockean proviso)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받아들인다.⁷⁾ 이 조건은 오늘날 厚生經濟學의 Pareto적 조건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Locke적 사회계약의 전제는 각자가 생산한 생산물을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개인이 Locke적 단서를 지키며 타인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게 될 때 아나키적 균형상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약탈과 방어의 노력이 필요 없는 각자가 순수하게 생산해 낸 산출량 수준이 사회계약의 기초가 될 것이다. Gauthier(1986, 7장)는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협상과정에서 強制(coersion)과 위협이 전제되는 한, 합리적 개인에 의한 사회적 잉여생산물의 正義로운 分配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뒷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3. Rawls의 자연상태

Rawls에 의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구조의 틀을 위한 사회계약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전제로서 우선적으로 꼽는 것은 아나키적 상태가 原初的 平等性(primitive equality)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초적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한 Rawls적 자연상태는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假說的인 아나키 상태이다. Rawls가 이러한 원초적 상태를 設定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로, 현실세계의 不正義(injustice) 존재의 한 원인은 기본적 사회구조에 대한 합의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初期상태에서는 소유권이나 자연적 賦存상태가 任意의하거나 정당성을 결여할 수 있는데, 현실의 사회경제구조가 이와 같은 道德的으로 무관한(morally irrelevant) 상황에 기초하게 되는 것

7) Nozick의 Lockean proviso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Locke's proviso that there be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is meant to ensure that the situation of others is not worsened.” Nozick(1974), p. 175.

이다.

둘째로, 현실세계의 협상에서는 참여자들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협상테이블에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 및 그들의 능력과 기호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사회 구조와 優先順位 및 分配原則을 결정하는 문제에 본질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無知의 베일 概念이 도입된다. 따라서 Rawls는 개인적인 자연적 자산이나 능력은 사회 전체의 ‘共同資產’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awls(1971), pp. 100-101). 그에 의하면 不平等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正義의 원칙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초기상태에서의 정당하지 못한 불평등을 제거 또는 修正하기 위한 원칙을 Rawls는 補償 또는 수정의 원칙(principle of redress)이라고 불렀다.

자연상태에서 개인의 自然賦存量 또는 능력차이에서 기인하는 초기분포상태(initial status quo)가 正義로운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Rawls 만큼 명쾌한 이론적 설명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Rawls에 의하면 정의로운 사회계약의 전제로서의 자연적 아나키 상태는 본질적으로 外生的 또는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자연상태의 불평등이 제거된 상태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초기상태의 부존상태나 자연적 偶然의 산물인 초기의 불평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Buchanan이나 Nozick 또는 Gauthier보다 Rawls 가 훨씬 平等主義的이라고 볼 수 있다.

IV. 協同的剩餘와 協商

지금까지는 사회계약을 위한 협상의 전제가 되는 아나키 상태의 特性에 관하여 新계약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논의하였다. 지금부터는 협상의 전제가 되는 아나키 상태로부터 어떻게 사회적 협동과 잉여에 대한 정당한 분배원칙을 이끌어내는 협상에 의해 사회적 계약이 출현하는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두 사람 또는 두 계급으로 구성된 자연상태를 상정하기로 한다. 사회적 협동을 위한 사회적 계약의 분석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협상을 위한 초기상태로서의 아나키적, 자연적 분포의 상태, 둘째 협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잉여의 크기, 셋째로 그 잉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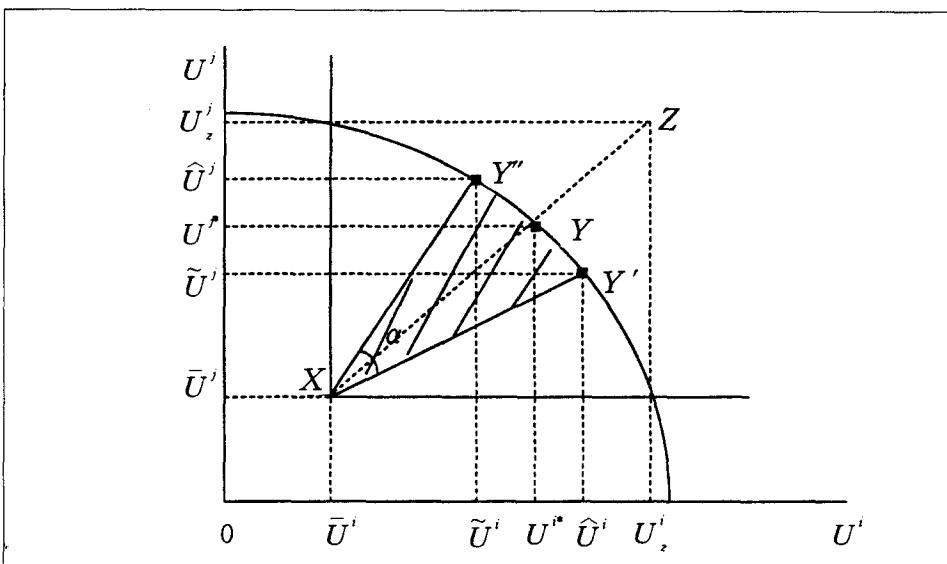
분배몫에 대한 각자의 기대치 등이다. 또한 협상과정에서의 협상력의 크기도 중요한 요인이나 여기에서는 초기상태의 위협치(threat value)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것은 자연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각자의 몫으로 사회적 협동에 의한 임여에 대한 기대값이 0인 상태이며, 각자에게는 최저의 기대치인 셈이다. 이 몫은 협상과정에서 사회적 협동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먼저 협동을 통해 도달가능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효용가능곡선(utility possibility frontier; UPF)을 상정하고 두 사람 또는 두 계급의 생산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아나키적 균형상태를 가정하기로 하자. 사회적 협동의 결과에 대한 각자의 기대치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아나키적 상태에서의 자신의 몫보다는 클 것이다. 그 누구도 자연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몫보다도 사회적 계약 후의 자신의 분배몫이 작아지게 된다면 그 계약이나 협동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림 1〉을 보자. 점 X 는 아나키적 균형상태이다. 이 점은 사회계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不合致点(disagreement point)으로 간주되며 이 점으로부터 얻는 효용수준 \bar{U}^i 와 \bar{U}^j 는 쌍방의 威脅值로 작용하게 된다.

이 때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는 임의의 한 사회적 계약 C_i 은 집합 $\{C\}$ 안에 속하게 된다. 이 집합은, 즉 $\{c_1, c_2, c_3, \dots, c_n\}$ 은 UPF의 형태와 위협

〈그림 1〉



치 \bar{U}^i , \bar{U}^j 에 의해서 결정되는 Pareto 우월영역으로 표시된다. 그러면 어떠한 사회적 계약도 Weikard(1994)에 의하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개인적 합리성 조건(individual rationality condition), 또는 계약가능 조건(contract possibility condition), 즉 $U_i \geq \bar{U}^i$. 그리고 둘째로 Pareto 우월조건(Pareto superior condition), 즉 $c_i \in \{C\}$ 이다. 이 때 사회적 협상의場은 $\{X, C\}$ 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협상의 해결책으로서의 사회계약 c^* 는 $c^* \in \text{core}\{C\}$ 를 만족하게 될 것이다.⁸⁾

여기에서 사회적 협동 이후 각자 뜻의 기대치에 관한 각자의 인식(perception)은 대단히 중요하다.⁹⁾ 쌍방 모두 협상결과에 대해서 樂觀的인 인식을 가질수록 각자가 상대방을 착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각자가 기대하는 상황은 Z 점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양쪽 모두 결과에 더욱 낙관적이 될수록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착취동기가 커질수록 협상가능영역은 사라지고 아나키 상태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쌍방의 기대치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Y' 이나 Y'' 같은 점이 선택될 수 있다. 가령 Y' 점의 경우는 개인 j 의 주어진 비관적 협상결과 기대치 \bar{U}^j 에 대해서 개인 i 가 취할 수 있는 극대의 i 의 뜻 \bar{U}^i 을 표시한다. Y'' 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협상가능영역(bargaining possibility set)은 빚금친 Pareto的 개선영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크기는 X 와 Y' , Y'' 이 이루는 각도와 UPF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¹⁰⁾ 또한 각자의 기대치가 대단히 비관적이어서 자신의 뜻은 단지 자신의 위협치를 넘지 못할 것이고, 반면에 상대방의 뜻은 공동생산의 잉여를 모두 가져가는 최대치가 되리라고 인식한다면, 그 때 α 값은 90° 로 선택가능영역 또는 협상범위(bargaining range)는 최대가 될 것이다.

8) 이 때 어떠한 사회계약의 점이라고 해서 모두 효율적인 UPF에 속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으로 양쪽 당사자가 아나키에서의(특히 Hobbes적 아나키 상태) 모든 약탈적 행위를 완전히 폐기시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약탈적 행위가 훨씬 제한되기는 하겠지만. 가령 냉전시대의 軍縮협상에서도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동결시키는 차선적 해결책이 더 일반적이다.

9) 협상결과에 대한 인식의 개념은 Hirshleifer(1995)의 논문에서 볼 수 있다. 그는 사회적 蔓藤에 대한 경제이론적 해결책을 논하면서 갈등의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를 낙관적 그리고 비관적 인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협상결과에 대하여 낙관적 期待를 가질수록 갈등타결가능영역(conflict settlement possibility region)은 줄어들게 되어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10) 생산가능곡선의 모양은 두 사람의 협동과정에서의 노동의 분업 정도, 생산기술,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 또는 체증 정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반면에 각자가 잉여생산물에 대한 최대한의 기대치와 최소한의 기대치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α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고 Pareto적 우월영역도 줄어들게 된다. 극단적으로 $\alpha = 0$ 이 되는 경우는 곧 협상가능영역이 한 직선으로 수축되어 코어(core)는 <그림 1>에서 Y 점 한 점으로 귀착되게 된다.¹¹⁾ 이때 개인 i 의 상대방 j 에 대한 기대치는 U^* 이며 i 가 도달가능한 효용획득은 U^{**} 이다. 또한 개인 j 의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므로 Y 점은 바로 Nash적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으로부터 우리는 하나의 命題를 도출할 수 있다.

<命題 1> 잉여생산물 분배의 협상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들이 협상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즉, 보다 낙관적이 될수록) 협상을 통해 합意에 도달할 가능성은 적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그래프적 증명을 보면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그림 1>에서 쌍방의 선택점은 Z 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따라서 UPF 영역 밖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은 아나키 상태로부터 사회계약에 이르는 협상과정을 통하여 平等主義的(egalitarian) 分配상태가 도달가능한가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은 사회계약을 위한 협상과 평등주의적 분배가 兩立할 수 있는가에 관한 흥미있는 문제이다. 이는 <그림 2>가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 E 점은 완전균등분배점이다. 이 점은 계약가능집합 $\{C\}$ 에 속해 있으며 코어의 한 점이다. 즉, $E \in \text{core}\{C\}$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나키 균형상태 X 점이 X 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E 점은 集合 $\{C\}$ 에 속하지 않게 된다. 즉, $E \notin \{C\}$ 이다. X 에서 X 으로의 이동은 두 당사자 간의 능력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회계약과 평등주의에 관한 한 명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命題 2> 만약 아나키적 균형상태가 평등분배점보다 좌하향으로 위치하게 된다면, 즉 쌍방간의 능력의 격차가 작아지게 되면, 평등분배점은 협상을 통한 사회계약으로 도달가능하다.

11) 여기서 코어란 Pareto적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효율적 분배점이며, 동시에 양쪽 당사자들에 의해서 배척(block)되지 않는 계약가능영역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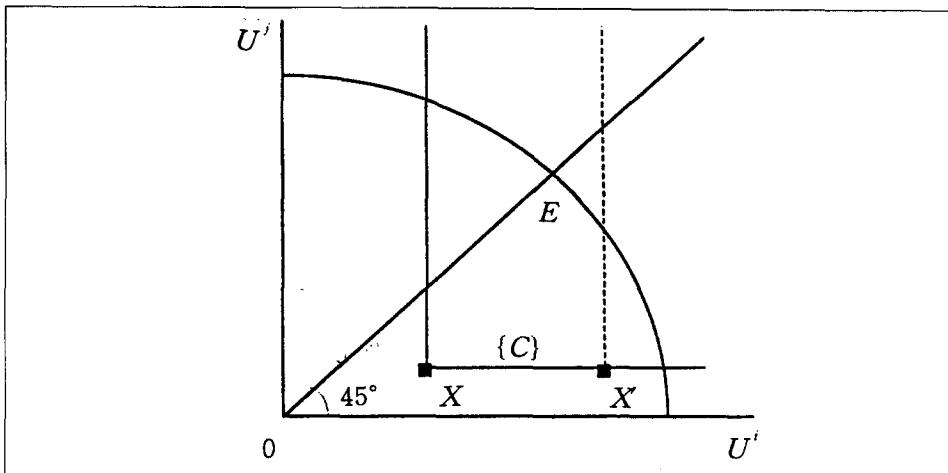
이 문제는 E 점이 가져다 주는 평등배분의 둛이 두 당사자 모두에게 그들의 최소기대치인 각각의 위협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E 점은 양 당사자에 의해서 배척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만약 평등주의 분배점 E 가 아나키적 균형점 X 보다 왼쪽에 위치하면 평등주의적 분배는 사회계약과兩立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그래프적 증명은 <그림 2>에서 명확하다. 이 문제는 아나키적 자연상태에서 두 개인의 생산능력(여기서는 효용축이므로 재화로부터 효용을 이끌어 내는 능력까지 포함해서)의 차이가 커질수록 평등주의적 분배를 가져오는 사회계약은 우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의 利己的 동기에 의해서 사회배분점이 E 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배척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 문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능력 많은 자와 능력 없는 자의 사회적 결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능력 많은 자가 사회적 협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대단히 적기 때문이다.¹²⁾ 개인 간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한 계약의例로 들 수 있는 結婚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결혼제도란 당사자들의 독립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2人 협상모형에 기초하며, 따라서 결혼은 자발적 합의에 의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사회적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결혼을 통한 결합은 비슷한 학력, 집안배경, 재산 정도, 사회적 지위인 경우에 맺어지기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법칙이다. 문제 2가 성립하는 초기상태 조건이 충족되어야 결혼이라는 계약도 성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결혼이 순전한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만 사회적 계약을 추구하는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그림 2>에서 X 과 같은 초기조건에서도 결합의 계약이 배척되지 않고 E 점을 공유하는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Phelps(1985, pp. 134-136)는 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령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운전기사라든가 경호원과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이기적 동기에 의한 계약을

12) 여기에서 익명의 논평자 역시 지적한 대로 현실적으로 존재해 온 노예제도나 토포와 소작 농의 관계 또는 백인과 저숙련 흑인의 고용관계는 사회계약주의에 입각해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할 사회계약주의 이론의 기본전제는 바로 사회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의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발적 참여에 의한 만장일치적 승意에 의하지 않은 계약에 의한 제도는 ‘正義’롭다고 할 수 없다. Rawls가 사회적 총효용을 극대화하려는 공리주의는 노예제도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것도 노예제도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지 않은 부정의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본문의 문제는 이와 같은 계약주의적 전제하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림 2)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원리(principle of love)에 의해서 가능한 경우이다.¹³⁾

V. 社會制度의 出現

아나키적 상태에서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의 所有權이 인정되는 사회적 제도가 出現할 수 있다. Hampton(1993)은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하게 되는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의 출현을 분석하였고, Holcombe(1994)의 소유권의 경제적 모형에 의하면 사회제도는 소유권의 확립형태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모든 개인 간에 동등한 권리와 소유권이 보장되며 시장을 통해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分權化된 제도, 그리고 둘째로 개인 간 소유권의 분배가 불평등하고 권리가 집중화되어 있는 권력집중적 제도로 분류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회계약이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만

13) 사랑의 원리가 작용하는 이 상황은 소위 ‘신데렐라’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기 상태[身分]의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두 당사자 모두 높은 (왕자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소비수준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도 신데렐라 경우외는 반대로 낮은 정도의 소비수준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Edward 왕과 Simpson 부인의 경우가 바로 좋은 예이다. 한 익명의 논평자께서는 이 경우 <그림 2>에서의 축이 효용축이 아니라 소득 또는 소비수준으로 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지적을 하여 주었다.

장일치적인 同意에 기초해야만 한다면 두 번째의 불평등하고 집중적인 제도는 오히려 非契約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불평등한 제도는 당사자들 간에 능력이나 힘의 격차가 상당히 클 때 공동생산을 약정하는 사회계약을 통한 공동생산에 의한 상호혜택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어느 일방이 (능력 많은 자가) 다른 일방을 사회계약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정립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계약을 위한 초기의 상태가 무지의 장막에 의해 원초적 평등 상태가 유지되는 Rawls적 아나키 상태이거나 또는 강제나 위협이 없으며 각자가 초기상태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 Gauthier적 협상과정에서 얻어지는 사회계약에 기초해서 출현하는 사회적 제도는 전자의 제도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과 힘의 위협에 의해 아나키의 초기분배상태가 결정되는 Hobbes적 자연상태에서는 사회계약을 통해 후자의 사회제도가 출현할 수가 있다. 아나키에서 어떤 형태의 사회제도로 나아갈지는 개인 간의 능력차이,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관계에 기초한 협상력 및 협동에 의한 잉여생산물이 결정하는 타결가능영역의 크기, 각자의 협상결과에 대한 기대치의 정도, 그리고 협상의 실패 또는 재협상(renegotiation)에 의한 아나키로의 회귀가능성 정도 등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

지금부터는 Holcombe의 2人 모형에 기초하여 사회계약에 의해서 출현하게 될 사회제도가 사회적 생산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받는지 보자. 강제적 제도는 강자는 약자를 감시와 감독 및 관리하는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아울러 약자는 공동생산에서 非誘因(disincentive)을 갖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제도를 보장하는 제도보다 사회적 생산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하에서의 효용가능집합(utility possibility set)을 비교하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협동체제에서의 UPS(UPS^c)가 억압적이고 종속적인 강제체제의 UPS(UPS^s)보다 더 클 것이다. 즉, $UPS^s \in UPS^c$ 이다.¹⁴⁾ 〈그림 4〉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쌍방의 협상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a 의 크기로 주어졌다면 억압적 제도하에서 개인 i 가 최대한 얻어 수 있는 기대치가 \bar{U}_i^s 인 데 반해 협동적 제도하에서는 최소한으로 있는 기대치가 \bar{U}_i^c 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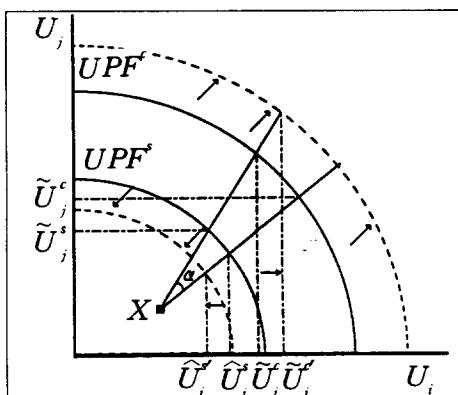
14)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대단히 효율적인 노예제도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주인의 효용수준은 매우 커서 협동적 생산체제가 되었을 경우에서 얻게 되는 자신의 효용수준을 능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노예제도가 지속될 것이다.

런데 $\hat{U}_i^s < \hat{U}_i^c$ 이고 또한 개인 j 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에 의해 $\hat{U}_j^s < \hat{U}_j^c$ 이므로 억압적 체제보다 협동적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다. 물론 이와 같은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쌍방의 최대 및 최소기대치, 두 가지 범주의 제도하에서의 잉여생산물 증가분에 대한 정보 등이 주어진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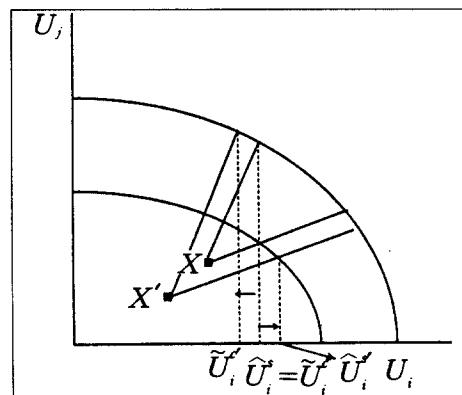
〈命題 3〉 협동에 의한 잉여생산이 대단히 커질수록 또는 상대방에 대한 착취비용이 증가할수록 협상을 통한 사회계약에 의한 제도는 보다 분권적이고 자유로운 협동체제를 갖는 제도가 확립될 가능성성이 크다.

즉, 〈命題 3〉의 증명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협동에 의한 분업이나 협력으로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 협동체제의 UPS는 밖으로 확장되며, 반대로 비효율적인 노예제도와 같이 노예의 생산활동을 감시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커진다면 억압체제의 UPS는 안으로 수축될 것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에게 $\hat{U}_i^s < \hat{U}_i^c$ 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즉, \hat{U}_i^c 는 \hat{U}_i^s 으로 늘어나고 \hat{U}_i^s 는 \hat{U}_i^c 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명제는 〈命題 2〉와 무관하지 않다. 즉, 쌍방의 능력의 격차가 적을수록 협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호이익의 가능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자발적 협동체제가 쉽게 결성될 수 있지만, 반대로 능력 격차가 클수록 상호이익의 가능성성이 적어지므로 강한 자에 의한 억압적 제도가 출현하기 쉬워진다.

〈그림 3〉



〈그림 4〉



다음으로 초기상태(status quo)의 변경이 사회제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 일반적으로 사회계약 후에는 아나키적 상태에서 벗어나 시간이 진행되면서 사회구조는 더욱 분화되고 분업체계는 더 심화되어 사회제도는 계속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기존 제도에 대한 재협상(renegotiation)의 시도가 있을 때 그것이 쌍방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다시 아나키적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처음의 사회계약을 위한 협상 때의 초기 자연상태보다 훨씬 열등한 아나키적 상태로 전락하기 쉽다.

〈그림 4〉는 사회제도가 더 발전하고 사회의 생산력이 증대될 때 사회제도에 대한 재협상이 깨지는 경우에 회귀하게 되는 아나키적 상태 X' 이 처음의 아나키 상태 X 보다 더 열등해진 경우를 보여 준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명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命題 4〉 사회적 재협상의 전제가 되는 아나키적 자연상태가 원점에 가까워 질수록 사회계약의 재협상이 깨질 경우(合意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더 열등한 아나키 상태로부터는 사회적 구조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억압적 구조로 환원되기 쉽다.

이에 대한 증명은 〈그림 4〉에서 자명하게 보여 준다. X 상태하에서 개인 i 의 효용수준이 그림의 편의상 $\hat{U}_i^i = \hat{U}_i^c$ 인 상태에 있다고 하자. X' 상태로 회귀하게 되면 \hat{U}_i^i 는 \hat{U}_i^c 로 증가하고 \hat{U}_i^c 는 \hat{U}_i^c 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개인 i 는 협동적 제도보다는 불평등한 억압적 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Rawls적 평등상태에 기초한 사회계약에 의해서 출현한 공정한 社會制度가 시간이 지나면서 평등적 상태가 유지될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Holcombe(1980)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구 사회에서의 古典的 自由主義(classical liberalism)의 쇠락을 사회계약적 모형 안에서 다루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계약에 입각한 사회일지라도 사회의 분화가 심화될수록 정부엘리트집단에 의해서 사회적 임여의 분배는 그들에게 유리한 偏倚(bias)를 띠게 되므로 사회계약의 기본정신은 훼손되며 사회적 구조 역시 그들에게 유리하게 발전하게 된다.

VI. 社會契約的 分配原則의 公正性

이 절에서는 사회계약주의에 기초하여 도출될 수 있는 분배원칙은 과연 공정성의 속성을 지닐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여기서는 Rawls의 차등원칙과 Gauthier의 상대적 최소최대양보의 원칙을 예로 들어 분석하기로 한다.

1. Rawls적 차등원칙

Rawls는 사회계약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이 그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 그리고 개인적 선호에 대해서 無知한 원초적 아나키 상태에서 합리적 개인이 選擇하게 되는 일반적 原則으로 그 두 원칙을 들고 있다. Rawls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 의하면 첫번째는 인간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에 관한 원칙이고, 두 번째는 이미 잘 알려진 경제적 원칙으로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이다. 그런데 이 두 원칙은 순차적(lexicographic ordering) 원칙이어서 경제적 풍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Rawls의 주장은 Strasnich(1975), Hammond(1976)에 의한 公理的(axiomatic) 모형에 의해 엄격하게 도출되었다. Strasnich은 엄격한 몇 가지 公理, 즉 匿名性(anonymity), 二元性(binarity), 中立性(neutrality), 滿場一致牲(unanimity) 등을 만족하는 社會厚生函數로 Rawls의 원칙을 이끌어 냈다. Hammond는 Arrow의 사회후생함수로 효용의 개인 간 비교(inter-personal comparison)를 도입하고 Sen流의 公平公理(equity axiom)를 만족하는 유일한 一般的 사회후생함수는 順次的(lexicographic) Rawls流의 差等原則(difference principle)뿐이라는 점을 보여 주었다. 이 이론들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대안 X, Y 가 있고 개인 i, j 가 있다고 하자. (a) $X_i > Y_i$, 그리고 모든 $j = i$ 에 대해서 $X_j > Y_j$ 및 $Y_j > Y_i$ 가 성립하면 Y_i 는 집합 (X, Y) 에서 최소지배원소(minimal dominated element)이다. 즉, $Y_i \in \text{MinDom}(X, Y)$. (b) 만약 $Y_i \in \text{MinDom}(X, Y)$ 이면 개인 i 는 사회적 대안 X, Y 에 대해 最小受惠者이다. (c) $Y_i \in \text{MinDom}(X, Y)$ 가 성립하는 개인 i 가 존재할 때 대안 X 가 대안 Y 보다 Pareto적으로 우선한다면, 즉 xPy

라면, 이때 社會選好函數는 Rawls의 사회선흐함수이다.

그 후 Arrow(1973), Musgrave(1974), Harsanyi(1975) 등에 의하여 그의 최대최소전략에 의한 차등원칙이 비판받게 되었다. 가령 Arrow(1973) 와 Mueller · Tollison · Willett(1976) 등은 Rawls적 사회선흐함수를 일반적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의 테두리 안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Arrow는 각 개인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무한히 危險回避적이라면 이 때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Rawls적 후생함수에 接近하게 됨을 명확하게 증명하였다. 즉, Rawls의 차등원칙은 일반화된 공리주의체계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⁵⁾ Harsanyi는 Rawls의 최대최소전략이 현실세계에 적용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맹점의 反對例(counter example)를 보여 주고 있다.¹⁶⁾

Rawls(1974)는 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였다. 우선 원초적 상태에서의 합리적 개인은 기본적 優先財(primary goods)의 최소수준의 확보가 절대 과제이며 이 수준 이상의 확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¹⁷⁾ 두 번째로는 합리적 개인들은 모든 것이 不確實한 상황인 아나키에서는 Vickrey(1960), Harsanyi(1974)와 같은 新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期待效用(expected utility)을 極大化하려는 전략이 합리적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무지의 장막 뒤에서는 기대효용을 계산해 내기 위한 確率을 추출할 수 있는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지의 장막이 가져다 주는 不確實性 하에서 합리적 행위자들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바로 최대최소전략(maximin strategy)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例로써 Rawls의 입장

-
- 15) 또한 Yaari(1981)는 Rawls적 解가 2人 제로섬 게임에서 최소최대정리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Rawls의 차등원칙이 공리주의적 平均效用극대화(average utility maximization)의 원칙과 양립될 수 있다는 同等性定理(Equivalence Theorem)를 증명하였다. 이 정리에 의하면 Rawls적 解는 일반화된 공리주의적 解(generalized utilitarian solutions)의 하나이며 또한 공리주의의 사회선택 基準이 만약 唯一한 해를 갖는다면 그 해는 반드시 Rawls적 해와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 16) 그의 反對例에 의하면 최대최소전략에 따라 행동하면 New York의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이 Chicago에 좋은 직업이 생겨도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은 合理的인 행동의 준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 17) Rawls의 기초우선재는 자유, 기회, 所得, 富, 自尊(self-respect) 등이다. Rawls의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Narveson(1982)의 해석에 의하면 이들 우선재의 확보가 최소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들에 대한 限界效用이 無限大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수준 이상에 대해서는(이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는 모호하지만) 한계효용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Narveson(1982), p. 139).

을 응호하려고 한다. 사회적 역할이 주인과 노예의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사전적으로 원초적 상태에서는 나중에 무지의 베일이 걷힌 후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모른다고 하자. 또한 노예나 주인이 될 확률은 각각 모두에게 똑같이 $1/2$ 이라고 하면 이 때 개인적인 선택에 기초해서 노예제도와 같은 사회가 성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확률적 분포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예가 될 확률은 누구나 $1/2$ 이므로 일단 무지의 장막이 걷힌 후에 내가 노예역할을 하게 된다면 일생 노예로 남게 된다. 이 경우에는 복권 뽑는 것과 같이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Harsanyi의 均等確率모형에 의하면 무지의 장막 뒤에서의 $1/2$ 의 확률로 사회적 역할을 맡는 경우를 마치 일생의 반은 노예로 나머지 일생의 반은 주인으로 살 때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¹⁸⁾ 만약 이와 같이 삶을 살 수 있다면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일생에 한번 주인이냐, 노예냐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결코 복권 사듯이 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Rawls의 원칙에 대한 비판은 무지의 장막에 기인하는 不確實性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즉, 불확실성에 따른 危險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것은 위험의 確率分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주어지는 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新공리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기대효용의 극대화행동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위험의 확률분포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면 Rawls의 최대최소전략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¹⁹⁾

18) Harsanyi의 균등확률모형은 영화 *Primal Fear*에서의 주인공처럼 다중인격(multiple personality)의 소유자이거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처럼 낮에는 지킬 박사로, 밤에는 하이드 씨로 사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적용될 것이다.

19) 이 문제는 결국 무지의 장막의 特性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의 확률적 분포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무지의 베일 자체가 어느 정도의 '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반면에 위험의 확률적 정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다면 그 베일의 특성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서 어떠한 정보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차단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초적 상태에서 Rawls의 베일은 '두꺼운(thick)' 장막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Harsanyi와 같은 신공리주의자들의 베일은 '얇은(thin)' 장막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Gauthier의 相對的 最小最大讓步의 原則

합리적 협상을 위한 초기상태(Initial Bargaining Position)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Gauthier(1986, 7장)는 Buchanan이 기초하고 있는 Hobbes적 아나키 균형상태는 사회계약을 위한 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초기상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Hobbes적 자연상태는 위협과 강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uchanan적인 사회계약모형은 비생산적인 약탈과 방어활동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자연균형상태의 副最適性(suboptimality of natural distribution)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상태하의 개인은 Leviathan과 같은 거대국가의 출현에 동의하게 되는 사회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Gauthier는 강제가 없는 자유롭고 공정한(impartial) 협상이 모든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본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合理性과 正義로움은 부합될 수 있다(Justice and reason coincide, Gauthier(1986), p. 150).

우선 Gauthier가 초기상태로부터 합리적 협상과정을 통하여 도출해 낸 그의 분배원칙을 검토해 보자. 그가 제안한 사회적 임여의 분배에 관한 협상을 통해 도달된 합리적 해결책은 바로 相對的 最大讓步의 最小化原則(principle of relative minimax concession)이다.²⁰⁾ 사회적 임여의 분배에 대한 협상적 상황 $\{X, C\}$ 을 보여 주는 <그림 1>을 다시 보자. 이 때 각자의 임여에 대한 최대한의 기대치는 Z 점이 되므로 UPF 밖에 위치한다. 따라서 합리적 협상자들은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 양보의 폭은 $(U_i^* - U_i')$ 으로 표시된다. 이 때 이 양보의 절대값보다는 그 상대적 정도가 합리적 분배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더 중요하다. 이 相對的 讓步(relative concession) R_i 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0) Gauthier(1986) 4장, 특히 pp. 141-145. Gauthier의 최소최대 상대적 양보의 원칙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령 Weikard(1994)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합리적 협상의 전제조건인 호혜(reciprocity)의 조건은 내가 양보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양보한다는 Kant적 윤리관에 기초한다. 그러나 양보하려는 의도나 그 정도는 각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에 달려 있게 된다. 그는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최대주장 또는 기대치는 협상과정에서의 전략적 행동을 고려하면 대단히 임의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R_i = \frac{[U_i^i - U_i^*]}{[U_i^i - \bar{U}^i]}^{21)}$$

이 때 합리적 행위자들은 자신의 상대적 양보의 크기 즉, R_i 가 다른 협상참여자(여기서는 j)의 R_j 보다 크게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또한 개인은 계약 가능한集合 $\{C\}$, 즉 $\{c_1, c_2, c_3, \dots, c_n\}$ 가운데에서 어떤 계약이 가져다 주는 상대적 양보 R_i 가 계약집합 안의 다른 점의 R_j 중의 최대치보다도 크다면 물론 그 계약은 폐기될 것이다. 즉, $R_i^* \leq \text{minimax}(R_i)$ 라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은 개인 모두에게 적용되게 된다. 결국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협상 당사자 모두에게 각자의 상대적 효용증가분이 均等化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림 1〉에서 XY선분은 쌍방의 효용증가분이 같은 Pareto 개선점들의 집합이다. 여기에서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상대적 양보의 크기가 같아지는 점은 Y점 뿐이다.

여기에서 Gauthier의 이 상호호혜의 양보에 기초한 분배원칙은 公正하다고 간주되며, 따라서 Gauthier에는 正義란 合理的 行動으로부터 나온다. 이 Gauthier의 분배원칙은 흥미롭게도 Rawls의 정의원칙과도 兩立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약 생산의 잉여분이 완전 可分의 아니고 분배에 있어서 보조금(side payment)지급이 불가능하다면 이 최소최대 상대적 양보의 原則은 최소수혜자의 상대적 효용증가분에 대한 級字的 최대치의 원칙(lexicographic maximin 또는 leximin principle)과 일치하게 된다. 즉, 여러 가능한 사회계약의 집합 안에서 최소수혜자의 상대적 효용의 증가분이 극대화되는 사회계약이 選擇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상대적 효용증가를 G_i 로 표시하면 $G_i^* \geq \text{maximin}(G_i)$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Gauthier의 최대최소 상대적 양보의 원칙은 협동의 잉여가 가분적이지 못할 때는 사실상 철자적 Rawls의 差等原則과 일치하게 된다.

Gauthier 이론의 핵심은 합리적 협상과정에서는 강제나 위협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합리적 행위자들이 강제에 기초한 초기상태에서 사회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이후에 반드시 재협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재협상은 새로운 기준의 강제가 전제되지 않

21) 상대적 양보는 모든 협상자들에게 똑같이 $0 \leq R \leq 1$ 의 값을 갖게 되므로 상대적 비교를 위한 유용한 指標가 된다.

는 초기상태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그는 이 주장에 대한 論據로서 古代 奴隸社會의 주인과 노예 간의 협상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고 있다. 이 에피소드에서 아나키적 자연상태로의 회귀와 같은 주인의 위협은 노예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아나키로의 회귀는 두 당사자 모두에게 열등한 厚生수준을 가져다 주므로 이러한 회귀는 모두에게 非合理的이기 때문이다.²²⁾

Gauthier는 암묵적으로 아나키로의 회귀가 주인들에게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고 보는 듯하다. 왜냐하면, 협동적 생산에 의한 잉여의 절대적 증가를 포기해야 하므로. 그러나 아나키로의 회귀로부터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비용과 회생을 더 치르게 되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만약 상대적 회생이 노예쪽이 더 크다면 주인의 자연상태로의 복귀위협은 협상테이블에서 중요한 협상카드로서 유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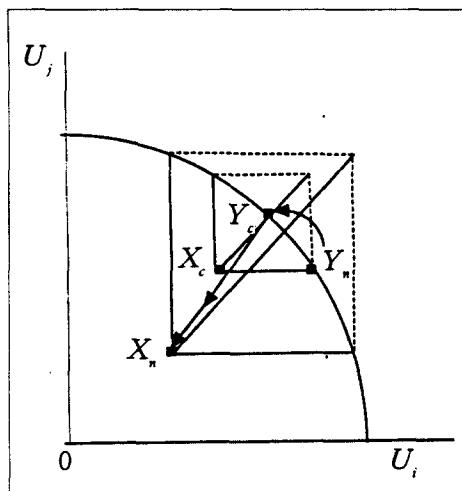
〈그림 5〉는 이와 같은 Gauthier의 非強制的 초기상태의 당위성을 보여 준다. X_n 은 강제가 존재하는 Buchanan적 초기상태이다. 이 때 Gauthier적 해결책은 Y_n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계약에 의해 주인과 노예가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전의 노예들이 (지금은 自由人인) 필요 이상의 양보를 이전 주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즉, 그들은 그들에게 非生產的인 노예서비스의 제공을 줄이려 할 것이다. 그것이 그림에서 Y_n 에서 Y_c 로의 이동이다. 그런데 이 점은 사실 초기상태가 X_n 에 기초해서 최소최대의 상대적 양보의 원칙을 적용한 해결점이다. 즉, 이 때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초기상태는 강제와 위협이 없는 非協同的이기는 하나 非強制的인 Locke적 단서가 충족되는 가상적 초기상태라고 할 수 있다.²³⁾ 이 때 Gauthier에 의하면 지금은 자유민인 이전 노예들이 과거와 같은 노예적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때, 즉 Y_n 에서 Y_c 으로 이동을 주장할 때 과거 주인들이 합리적이라면 X_n 으로의 回歸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외는 있을 수 있다. 가령 Locke적 단서에 의해서 제약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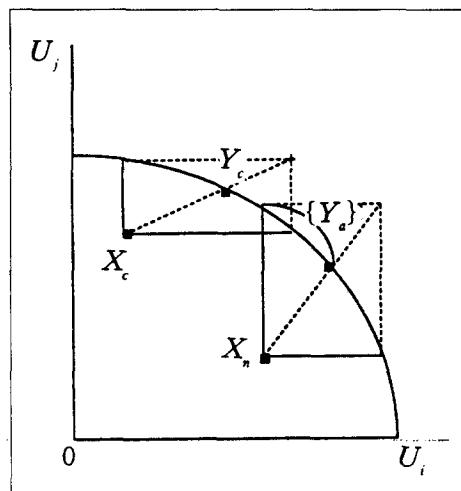
22) Gauthier는 Buchanan적인 위협(threat)이 존재하는 자연균형상태에서의 협상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Gauthier(1986, p.196)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But a return to the natural distribution benefits no one. What motivates compliance is the absence of coercion rather than the fear of its renewal.” (이탈리체는 필자가 강조하기 위한 것임)

23) 따라서 Gauthier의 모형에서는 합리적 행위자들은 강제에 기초한 어떠한 초기협상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치 초기상태에 Locke적 단서를 制約條件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

〈그림 5〉



〈그림 6〉



가상적 초기협상상태가 〈그림 6〉에서와 같이 X_c 가 위치하게 된다면 지금은 자유민인 과거의 노예들이 그들의 (그들에게는 비생산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초래되는 새로운 재계약상태가 Y_c 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전 주인들로서는 이러한 재계약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강제가 존재하는 초기 협상적 상태보다도 더 후생수준이 열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Y_a\}$ 영역 안에 새로운 재계약의 협상점이 위치해야만 이전상태로 회귀되지 않고 재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Gauthier의 이론에서 약점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아마도 그가 협상과정에서의 강제와 위협의 역할이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협상과정에서의 강제력(coercion)을 제거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 도달 후의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위협(threat)마저도 반드시 제거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림 6〉에서 보듯이 2단계의 협상하에서 주인의 효용수준이 사회계약 전의 초기상태보다 열등하면 물론 사회계약은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림 5〉에서도 사회계약 이후에 이전 노예들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주인들은 사회계약 이전 상태로 회귀하겠다는 위협의 가능성은 보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위협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양쪽의 인지도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위협의 인지 정도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회귀되었을

때 과연 어느 쪽에 더 큰 효용의 감소가 초래되는가, 그리고 어느 쪽이 열등한 상태의 초기상태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만약에 더 큰 화생을 노예쪽이 감수하게 된다면 아마도 Gauthier의 주장대로 재협상의 가능성으로부터 연유되는 초기상태의 변경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1단계 사회계약에 의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시도하게 되는 재협상에서는 초기 상태로의 회귀위협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절의 중요한 요체는 결국 Gauthier나 Rawls 모두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한 계약과 협상을 통하여 정의로운 원칙을 지니는 사회적 분배제도를 수립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VII. 맷 는 말

지금까지 本考에서는 사회계약주의의 관점에서 아나키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에 입각한 분배원칙과 사회적 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어떠한 아나키적 자연상태를 사회계약의 협상을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하는가를 Hobbes, Locke, Rawls와 같은 古典的 및 新契約主義의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사회적 다윈이즘 (Darwinism)이 철저히 적용되는 강자生存의 원리가 작용하는 원초적 투쟁상태를 사회계약의 기초로 보는 Hobbes적 내지 Buchanan적 사회계약이론이 있고, 다음으로 자연상태에 어느 정도의 자연권에 입각한 제한장치, 가령 Locke적 단서를 부과하여 상호소유권을 존중하는 상태로서의 자연상태를 사회계약의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Nozick이나 Gauthier의 이론이 있다. 그리고 Rawls와 같이 원초적 平等主義에 입각한 계약주의에 의하면 자연상태에서의 능력차이에 의한 불평등은 인정되지 않고 모든 개인은 無知의 장막에 가려 있게 되고 원초적 평등상태가 사회계약의 출발점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성립하게 되는 사회적 계약만이 正當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아나키적 자연분포상태로부터 사회계약과 그를 위한 협상과정을 2人모형하에서의 사회적 효용가능곡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命題를 도출하였다. 가령 능력의 차이가 큰 사회일수록 평등주의 사회가 구현되기 어려운 경우를 보여 주었으며 또한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적으로 진보할수록 사회에서의 재협상이 깨지는 경우에 보다 더 所有權이 불평등한 억압적 제도로 회귀하기 쉽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사회계약에 기초한 분배원칙으로서 Rawls적 差等原則과 Gauthier의 상대적 최소최대讓步의 原則을 도출하고 공정성에 비추어 논의하였다. 그리고 무지의 장막에 싸인 원초적 상태하에서 사회계약을 위한 개인의 合理的 선택의 기준으로서 과연 Rawls적 최대최소(Maximin)戰勝格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新公利主義에 입각하여 期待效用의 극대화원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本考에서는 그것이 결국 不確實性下에서의 危險分布에 대한 정보가 사전적으로 주어지는가에 달려 있게 되며 또한 사회적 제도의 선택이 과연 일생에 한 번의 선택인가, 아니면 복권과 같은 반복적인 선택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다. 그리고 Gauthier의 새로운 代案인 상대적 양보의 원칙을 도출하였고 이 원칙에 內在된 문제점들, 가령 합리적 협상의 전제조건인 초기상태의 非強制性(non-coercion) 그리고 협상에서의 최대주장의 임의성(arbitrariness) 등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사회계약주의에 입각해서 아나키적 자연상태를 어떻게 定義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자연상태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合意에 의해서 사회계약을 수립하게 되며 협동적인 사회체계로 나아가게 되는가를 단순한 2人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아나키와 사회계약에 관한 논의는 Hobbes 아래 수많은 사회과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 新사회계약주의의 復活 아래 경제학자들에게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나키에서 社會制度로의 移行에 대한 논의가 사회계약론과는 代替的인 방법론으로 제도와 慣習의 形成에 관한 進化主義的인 접근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制度에 대한 이러한 進化的 분석모형의 발전은 사회계약이론과 함께 아나키에서 사회제도로의 이행에 대한 경제학적인 이해에 더 큰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 崔炳瑞, “아나키의 經濟學,”『尹起重教授 停年紀念論文集』, 1997, pp. 409-430.
- Arrow, K. J., “Some Ordinalist-Utilitarian Notes on Rawls’ Theory of Justice,” *Journal of Philosophy* 70, May 1973, pp. 245-263.
- Buchanan, J. M., *The Limits of Liberty: Between Anarch and Leviath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4. _____ and G. Tullock, *The Calculus of Consent*,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2.
5. Bush, W. C., "Individual Welfare in Anarch," Tullock, *Exploitation in the Theory of Anarch*, Blacksburg: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1972, pp. 5-18 in G.
6. Gauthier, D. P., *Moral by Agreement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7. Gordon, S., "The New Contractaria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4, No. 3, 1976, pp. 573-590.
8. Hammond, P. J., "Equity, Arrow's Conditions and Rawls' Difference Principle," *Econometrica*, July 1976, pp. 793-809.
9. Hampton, J., "The Contractarian Explanation of the State," in W. Booth ed., *Politics and Rationali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33-60.
10. Harsanyi, J. C., "Cardinal Welfare, Individual Eth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3, 1955, pp. 435-455.
11. _____, "Can Maximin Principle Serve as a Basis for Morality? A Critique of John Rawls'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1975, pp. 594-606.
12. _____, "Morality and the Theory of Rational Behaviour," in A. Sen and B. Williams ed., *Utilitarianism and Beyon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39-62.
13. Hirshleifer, J., "The Economic Approach to Conflict," in G. Radnitzky, and P. Bernholz ed., *Economic Imperialism: The Economic Method Applied Outside the Field of Economics*, New York: Paragon House, 1986, pp. 335-364.
14. _____, "Anarchy and Its Breakdow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ebruary 1995, pp. 26-52.
15. Holcombe, R. G., *The Economic Foundations of Governmen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4.

16. _____, "A Contractarian Model of the Decline in Classical Liberalism," *Public Choice* 35, No. 3, 1980, pp. 260-274.
17. Mueller, D., R. Tollison, and T. Willett, "The Utilitarian Contract: A Generalization of Rawls' Theory of Justice," in R. Amacher, R. Tollison, and T. Willett ed., *The Economic Approach to Public Poli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pp. 313-333.
18. Musgrave, R., "Maximin, Uncertainty and the Leisure Trade-off,"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8, 1974, pp. 625-632.
19. Narveson, J., "Rawls and Utilitarianism," in Miller, H. B. and W. H. Williams ed., *The Limits of Utilitarian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2.
20.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21. Phelps, E. S., *Political Econom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85.
22.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23. _____, "Some Reasons for the Maximin Criter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4, pp. 141-146.
24. Schmidt-Trenz, H. J., "The State of Nature in the Shadow of Contract Formation: Adding a Missing Link to J. M. Buchanan's Social Contract Theory, *Public Theory*," Vol. 62, No. 3, 1989, pp. 237-251.
25. Skogh, G. and C. Stuart, "A Contractarian Theory of Property Rights and Crim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84(1), 1982, pp. 27-40.
26. Strasnich, S., "Social Choice and the Derivation of Rawls's Difference Principl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5.
27. Varoufakis, Y., *Rational Conflic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 Press, 1991.
- 28. Vickrey, W. S., "Utility, Strategy and Social Decision Rul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4, 1960, pp. 507-535.
 - 29. Weikard, H., "Fairness As Mutual Advantage," *Economics and Philosophy* 10, April 1994, pp. 59-72.
 - 30. Yaari, M. E., "Rawls, Edgeworth, Shapley, Nash: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Re-examined," *Journal of Economic Theory* 24, 1981, pp. 109-129.